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 법적 기반 강화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40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13140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3
2. 지능형교통체계계획과 다른 교통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안 제74조 및 제75조)	11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76조의2 신설)	16
4. 지능형교통체계 등의 품질 확보(안 제82조 및 제88조)	18
5. 국제협력전담기관 업무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89조) ...	23
6.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92조)	26
※ 참고자료	29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31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한편 현행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규정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과 행정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개정 이후 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16년간 실질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국내외 기업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레이다 등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의 수집·분석 및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보급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고도화하는 한편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Ⅲ. 검토의견

1.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77조¹⁾에서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²⁾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개념 범위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관리’도 포함시켜 제2조의 정의 조문으로 옮겨 규정하며, 현행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등 관련 용어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란 <u>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활용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말한</u>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

현행	개정안
17. · 18. (생략)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7조(<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의 시행) ① <u>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u>(이하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 3.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다. 17. · 18. (현행과 같음)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 -----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의 시행) ①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은-----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의----- ----- --. ③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의----- -----. 제78조(<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시행지침) ①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의-----

현행	개정안
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설계·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u>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u>”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u> 시행하는 자(이하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라 한다)는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u> 따라야 한다. ③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u> 제정·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 ----- -----<u>지능형</u> <u>교통체계사업의</u>-----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지침</u>----- ----- --. ②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u>-----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 <u>을</u>-----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지침에</u>----- -----. ③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지침의</u>----- ----- ----- -.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②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는-----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은 것으로 본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생략)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고시한 경우에는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 ----- -----.
③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운영 중인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생략)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u>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변작(變作)하거나 위작	② -----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의</u> ----- -----

현행	개정안
· 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u>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 센터의 구축 등) ①·② (생략)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u>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u>교통체계지능화사업</u>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 -----. ③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의</u>----- ----- -----.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 센터의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가</u>-----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을----- ----- ----- ----- ----- ----- ----- ----- -----

현행	개정안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4. (생략)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u>교통체계지능화사업</u> 또는 <u>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u>(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 조정 16.·17. (생략)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u>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u>----- ----- 16.·17. (현행과 같음) 제117조(벌칙)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의</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내용에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관리도 포함되므로 실제와 합치되도록 용어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아울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용어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은 용어의 개념과 용어 간의 정합성, 용어 이해의 직관성, 용어 사용의 간결성 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봄.

다만, 개정안 시행 시 현행법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각각 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지침”,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둘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 일괄 정비하여 법령 해석 시 혼란 해소 및 명확성 제고를 기대하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범위에 ‘유지·관리’를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능 유지 및 개선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음.

가.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 ----- ----- ----- ----- ----- ----- ----- ----- ----- ----- -----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 -----하며, 지능형교통체계 <u>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u>

현행	개정안
② ~ ⑧ (생략)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군기본계획</u>,----- ----- -----<u>스마트도시계획</u>,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과-----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74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하 “지방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그 안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상위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³⁾ 연계·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도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

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획이 수립된 후에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지방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 관한 근거가 없음.

그리고 현행법 제75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4)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5)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제정된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월 제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4월 제정)에 따라 수립되는 '모빌리티 개선계획'⁶⁾ 및 '자율주

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 교통물류 기본계획⁷⁾은 연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이 변경되면 이와 연계하여 지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최근 제정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교통 관련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지방계획은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행법 제75조제2항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스마트 도시계획 등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6)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경우

③~⑥ (생략)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각 계획의 수준과 수립권자 등에 비추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지방계획 및 他 교통계획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ITS가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76조의2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6조의2(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2.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및 해외진출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

현행	개정안
	<u>는 시장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의 확대·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주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실효성 증대 및 ITS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4. 지능형교통체계 등의 품질 확보(안 제82조 및 제88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제정 목적에 현행 호환성 및 연동성 외에 ‘품질’ 확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의 품질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⁸⁾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⁹⁾가 지능형교통체계의 품질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88조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u>호환성 및 연동성을</u>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 ----- <u>호환성, 연동성 및 품질을</u> ----- ----- ----- -----

8)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제1호)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②·③ (생략)

※ 이 개정안에서 현행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지능형교통체계사업”으로 용어 수정

현행	개정안
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 ----- -----.
②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국 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 준을 제정·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 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 외의 자 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 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 ----- <u>지</u> <u>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교 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u>지</u> <u>능형교통체계사업을</u> ----- ----- ----- ----- ----- ----- ----- -----.
⑥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u> 제5 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 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	⑥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u> ----- ----- ----- -----

현행	개정안
련하여야 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 정보의 제공 등) ① (생략)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u>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u>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 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는----- ----- ----- ----- ----- -----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와-----. ③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는----- ----- ----- ----- ----- ----- ④ ----- -----<u>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u>는----- ----- ----- ----- ----- -----

현행	개정안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u>촉진하기</u>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⑥ (생략)	⑤ ----- ----- -----제7항에서----- ----- ----- ----- -----<u>촉진하며, 교통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u>----- -----. ⑥ <u>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소관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해당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품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정 목적에 품질 확보를 명시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정부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가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과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품질 확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호환·연동 수준을 넘어 신뢰도 높은 품질을 보장하도록 준수 의무 강화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ITS 사업시행자 등의 ITS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으로 전체적인 교통정보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5. 국제협력전담기관 업무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 89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민간참여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은 지능형교통체계 개발·운영에 대한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토대가 될 것이므로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민간참여 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능형교통체계 개발·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지원 업무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는 상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 규정의 취지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당초 전담기관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제 민간영역에서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전담기관 업무 범위 구체화를 통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민간 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6.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92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¹⁰⁾(이하 “협회”)의 사업 범위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능형교통체계표준 개발·보급·평가 및 활용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2조).

현 행	개 정 안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략)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u>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u>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6. (생략)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u>기술동향 조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u> 4. (현행과 같음) 5. <u>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u> 6. <u>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보급·평가 및 활용지원</u> 7. 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지능형교통체계표준 개발·보급 등의 사업은 협회가 현행법 제82조제4항¹¹⁾ 및 제89조제4항¹²⁾에 따라 각각 도로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전담기관 및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 조성이라는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협회 고유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봄. (참고1. 참조)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안 제92조)에 대해 동의함.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현황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설립일) 1999년 4월 7일

□ (설립목적)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 조성

*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통합교통체계법 §2)

→ 도로와 차량 등 교통 환경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이용자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 (예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안내(버스도착안내,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교통량에 따라 바뀌는 신호등, 하이패스 등

□ (설립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업무(통합교통체계법 §92)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조사·연구, ② 홍보·교육, ③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④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사업*

* 도로분야 ITS 표준화전담기관('10. 5. 31),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전담기관('10. 6. 23),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14. 5. 20)

자료 : 국토교통부